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779호 2022. 5. 19.(목)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2022-722호 통창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 1
- 사천시 공고 제2022-733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 4

예 규

- 사천시 예규 제3호 사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 5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2022-730호 사천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 39
- 사천시 공고 제2022-731호 사천시 어린이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51
- 사천시 공고 제2022-745호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64
- 사천시 공고 제2022-748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 74
- 사천시 공고 제2022-749호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본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88

회 람																			
--------	--	--	--	--	--	--	--	--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779호

사천시 공고 제2022-722호

통창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사천시에서 시행하는 「통창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그 밖에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5. 19.

사 천 시 장

1. 사업의 종류와 명칭

가. 사업의 종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나. 사업의 명칭: 통창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성 명: 사천시장(재난안전과장)

나. 주 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3. 사업예정지: 경상남도 사천시 동금동 236-1번지 일원

4.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 패널식옹벽 120EA, 영구앵커 120본 설치

- 비탈면 녹화 A=372.0㎡, 배수로 정비 L=22.0m 등

5.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예정일: 2022. 6.

나. 준공예정일: 2023. 12.

6. 열람의 기간 및 장소, 의견서 제출방법

가. 열람기간: 공고문 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사천시 재난안전과 재난방재팀(☎055-831-3316)

다. 의견서 제출: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포함)

7. 사용하거나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서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불임과 같음.

8. 관계도서는 재난안전과에 비치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재난안전과(☎055-831-33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편입토지·물건조서 -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1)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위 치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 고
	시	동/리	지번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사천시	동금동	237-3	철	226.0	226.0	사천시					
2	사천시	동금동	230-51	대	50.0	50.0	사천시					
3	사천시	동금동	230-127	대	11.0	11.0	사천시					
4	사천시	동금동	230-52	대	44.0	44.0	사천시					
5	사천시	동금동	230-128	대	17.0	17.0	사천시					
6	사천시	동금동	230-115	철	1.0	1.0	사천시					
7	사천시	동금동	230-114	도	4.0	4.0	사천시					
8	사천시	동금동	230-113	도	7.0	7.0	사천시					
9	사천시	동금동	230-53	도	54.0	54.0	사천시					
10	사천시	동금동	230-122	대	8.0	8.0	사천시					
11	사천시	동금동	230-119	대	2.0	2.0	사천시					
12	사천시	동금동	230-116	철	15.0	15.0	사천시					
13	사천시	동금동	230-54	대	14.0	14.0	사천시					
14	사천시	동금동	230-120	대	11.0	11.0	사천시					
15	사천시	동금동	230-73	대	30.0	30.0	사천시					
16	사천시	동금동	230-118	대	2.0	2.0	사천시					
17	사천시	동금동	235-3	전	255.0	255.0	사천시					
18	사천시	동금동	237-9	철	2.0	2.0	사천시					
19	사천시	동금동	237-8	철	42.0	42.0	사천시					
20	사천시	동금동	238-5	철	77.0	77.0	사천시					
21	사천시	동금동	244-1	철	65.0	65.0	사천시					
22	사천시	동금동	236	공	17663.0	2050.0	사천시					
23	사천시	동금동	158-35	도	5,600	18.0	사천시					
24	사천시	동금동	230-72	대	52	52	유*련	사천시 동금동 2**번지				
합 계					24,252	3,057						

2)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조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및 수량	단위	물건소유자		관 계 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1	사천시 동금동	230-72	주택	블록 강판지붕	49.35	m ²	유*련	경남 사천시 동금동 2**번지				
			화장실	블럭스레트	1.58	m ²						
			수도		1	식						

사 천 시 공 보

제779호

사천시 공고 제2022-733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2항에 의한 소유자의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동법 제24조의2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운행정지명령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2. 5. 19.

사 천 시 장

1. 공 고 명 칭: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 고 기 간: 2022. 5. 19. ~ 2022. 6. 2.(15일간)
3. 공 고 대 상

신청대상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일자	운행정지 사유
등록번호	차명	소유자		
300머5617	에쿠스(EQUUS)	정*나	2022.5.16	대포차로 운행되고 있어 소유자 요청으로 운행정지함.

4. 공 고 내 용

1)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1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의2 제2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을 공고 하오니, 차량운행자께서는 해당 자동차가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 하고 운행정지명령 해제 요청을 하신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2)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제7호 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동법 제82조(벌칙) 제2호의2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짐을 알려드립니다.

* 자동차 사용자 :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함.

3)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천시 민원교통과 자동차관리팀(055-831-33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779호

사천시 예규 제3호

사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2년 5월 19일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 민 희

사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사천시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되어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을 말한다.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아목 및 영 제3조제3항제3

사 천 시 공 보

제779호

호에 따라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년 이내 퇴직 예정인 공직자의 퇴직 후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2. 시 및 그 소속기관의 퇴직공직자(임직원)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영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① 시 소속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공직자는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

사 천 시 공 보

제779호

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이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해야 한다.

⑤ 시 소속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등)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 및 개발 업무 중 시가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사 천 시 공 보

제779호

업무는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주민 공고·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 관련 정보를 소속 공직자에게 분기별로 공지해야 한다.

1. 사업명

2. 사업 지구의 지번 (지도 등을 이용해 위치를 표시)

3. 사업 시행 일정 (사업 절차별 일정을 표시)

제7조(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및 조치) ① 공직자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보유하였음을 안 날부터 또는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8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①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시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779호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시 소속 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시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시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2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시 소속 공직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시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신고·신청의 기록·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회피·기피·조치·점검·통보·고발·업무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사 천 시 공 보

제779호

없으면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4조(위반행위 신고) ① 시 소속 공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2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시 소속 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5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이첩·송부 받은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신고에 대하여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79호

제17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19조(교육)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20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직자는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제21조(징계양정 기준) 시장은 이 법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2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해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설 2022.5.19.>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제6조 관련)

연번	부동산 개발업무	근거 법률	조항	공공기관의 역할
1	공공주택사업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공공주택 지구의 지정
			제16조	지구계획의 승인 신청
			제17조	지구계획의 승인
2	공항시설 개발사업	「공항시설법」	제7조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3	관광지 조성사업	「관광진흥법」	제54조	관광지조성계획의 수립
4	국방·군사시설 사업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작성
5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제29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88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6	기업도시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조	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제12조	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7	마을정비구역에서의 농어촌 정비사업	「농어촌정비법」	제101조	농어촌마을정비계획의 수립
			제103조	마을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8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제17조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연번	부동산 개발업무	근거 법률	조항	공공기관의 역할
9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15조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10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조	정비구역의 지정
			제9조	정비계획의 입안
			제50조	사업시행계획 인가
			제52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101조의3	정비구역 지정권자의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입안권자의 정비구역 지정 신청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정비계획 수립 제안				
11	혁신지구재생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1조	혁신지구의 지정
			제46조	혁신지구사업 시행계획의 작성
				혁신지구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12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5조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신청
				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의 시행
13	물류단지개발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수립
14	공공지원민간임 대주택사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의 작성
1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빈집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제13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29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제3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16	산업단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제7조의2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연번	부동산 개발업무	근거 법률	조항	공공기관의 역할
			제8조	농공단지의 지정
			제8조의3	준산업단지의 지정
			제17조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제18조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8조의2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9조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40조의2	공장입지 유도지구의 지정			
17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18	온천개발사업	「온천법」	제5조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제10조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19	시장정비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대한 추천 신청
			제35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
20	주택건설사업	「주택법」	제15조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의 승인

연번	부동산 개발업무	근거 법률	조항	공공기관의 역할
21	지역개발사업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제22조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제23조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45조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22	친수구역 조성사업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23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24	항만재개발 사업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별표 2] <신설 2022.5.19.>

법 위반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제21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5조에 따른 신고신청제출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제한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법 제14조에 따른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의 비밀 보장 의무 위반 ·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보호조치결정 미이행 · 같은 법 제20조의2의 특별보호조치 결정 미이행 · 같은 법 제19조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등 거부행위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법 제23조에 해당하는 비밀 누설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작성방법

- ① “담당 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 ② “사적이해관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이해관계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 마.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조례·규칙을 포함)·기준(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규정·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에 따라 지휘·감독하였던 실·국·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① 법령·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②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 ③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훈령 등 행정규칙이나 기준으로 정하는 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③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외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④ “직무관련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작성방법

- ① “담당 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 ② “사적이해관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이해관계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 마.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조례·규칙을 포함)·기준(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규정·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에 따라 지휘·감독하였던 실·국·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① 법령·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②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 ③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훈령 등 행정규칙이나 기준으로 정하는 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③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④ “직무관련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청인	성명	소속 [] 개인 [] 법인 [] 단체 [] 공직자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공직자	성명	소속
	① 관련 직무	
	신청인의 업무 담당 공직자와 관계 [] ② 직무관련자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기타	
기피 신청사유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기타()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천시장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①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② “직무관련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관련 직무	
의 견	

본인은 수행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천시장 귀하

제출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통보일
신고·신청인	성명 소속	신고·신청일
조치대상	[] 신고·신청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업무 담당 공직자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조치결과	[]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직무 재배정 [] 전보 [] 기타()	
	[] 해당직무 계속 수행 (사유: [] 해당 공직자 대체불가 [] 공익 증진을 위한 직무수행 필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기타 참고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천시장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①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작성방법

- ① “담당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 ②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③ “직무관련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서

•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및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소속 공공기관에서의 담당 업무		

부동산 [] 보유자 [] 매수자	성명	신고인과의 관계 [] 본인 []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 배우자 []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주소	

① 보유·매수한 부동산 관련 소속기관의 업무(사업명)

부동산	유형 [] 토지 (□ 소유권 □ 지상권 □ 전세권 □ 분양권) [] 건물 (□ 소유권 □ 전세(임차)권 □ 분양권)	취득(예정)일
	소재지	
	지번	지목

참고자료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사실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사천시장 귀하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① “보유·매수한 부동산 관련 소속기관의 업무(사업명)”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에 따라 신고인이 소속된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관련 업무(사업명)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제출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임용일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근무기간	명칭(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대리, 고문·자문 등

활동기간	기관명(소재지)	주요 업무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등

근무기간	업체명(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기타

근무기간	근무처(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천시장 귀하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

•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	----	----	--------

거래자	성명	신고인과의 관계
	연락처	[] 본인 [] 본인의 직계존속·비속 []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① 특수관계사업자

거래상대방	성명	소속	연락처
	[] 개인 [] 법인 [] 단체 [] 공직자		
② 직무관련자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			

거래내용	[]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 유가증권 거래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이율)	거래원인	
	[]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 등) 거래 [] 기타 재산상 거래		
	계약체결일	거래대상	
	거래금액	거래원인	
	[] 물품 계약 [] 용역 계약 [] 공사 계약 [] 기타 계약		
	계약체결일	계약사항	
거래금액	거래원인		

참고자료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사천시장 귀하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① “특수관계사업자”는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 ② “직무관련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을 “②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채용사유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예외 해당 여부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예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사천시장 귀하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공사 [] 용역 [] 물품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개인 [] 법인 [] 단체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천시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

•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직무관련자 (퇴직자)	성명	연락처	
	현 소속 기관	퇴직 전 소속 기관	
	① 직무관련자 <input type="checkbox"/>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input type="checkbox"/>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input type="checkbox"/>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input type="checkbox"/>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②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		
접촉 사항	일시	사유	
	유형 <input type="checkbox"/> 골프 <input type="checkbox"/> 여행 <input type="checkbox"/> 사행성 오락	비용부담자 <input type="checkbox"/> 신고인 <input type="checkbox"/> 퇴직공무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사천시장 귀하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① “직무관련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②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

•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

신고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신고내용 확인·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 여부 [] 동의 [] 비동의		

법 위반행위자 (피신고자)	[] 개인		
	성명	연락처	직업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성명	연락처	직업
	명칭(법인 또는 단체)	소재지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성명	연락처	직업	
명칭(법인·단체 또는 개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위반행위 신고	신고경위 및 이유	
	일시	내용
	장소	

증거자료	
------	--

위와 같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사천시장 귀하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인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신고기관 <input type="checkbox"/>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감독기관 <input type="checkbox"/> 수사기관 <input type="checkbox"/> 감사원 <input type="checkbox"/> 국민권익위원회		
	위원회 신고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이첩·송부 일자	이첩·송부 내용	
위반행위 신고사항	피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소속기관	피신고자 연락처
	신고내용		
종결처리	조사기관 <input type="checkbox"/>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감독기관 <input type="checkbox"/> 수사기관 <input type="checkbox"/> 감사원		
	종결사유 <input type="checkbox"/>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신고자가 신고내용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신고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종결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조사기관

사 천 시 장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공 보

제779호

사천시 공고 제2022-730호

「사천시 독서문화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독서 분위기 조성 및 독서 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시민에게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독서 문화 진흥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독서 문화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사 천 시 공 보

제 779 호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평생학습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 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평생학습센터소장)

(우편번호: 52516, 주소: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무산로 21

전화번호: 055-831-2960, 팩스번호: 055-831-2969)

사 천 시 공 보

제 779 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사 천 시 공 보

제779호

사천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의안 번호	2022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2. 5. .

제 출 자: 평생학습센터소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독서 분위기 조성 및 독서 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시민에게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독서 문화 진흥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독서 문화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사 천 시 공 보

제 779 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독서문화진흥법」

나. 예산조치: 2022년 당초예산 기 반영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5. . ~ 2022. 6.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779호

사천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 요약

가.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사천시민에게 독서문화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시민들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해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및 소외계층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액 반영
- 조례안 제3조(시장의 책무), 조례안 제5조(독서 문화 진흥 사업)

나. 비용추계의 결과

1) 추계의 전제

- 시민의 균등한 독서문화교육의 기회 제공과 생애주기별 및 소외계층을 위한 독서 문화 활동 운영에 따른 발생 비용

2)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 계
		세출	일반보전금	215,000	855,000	1,755,000	1,755,000	1,755,000
소계(a)	215,000		855,000	1,755,000	1,755,000	1,755,000	6,335,000	
세입	지방세	213,000	850,000	1,735,000	1,735,000	1,735,000	6,268,000	
	의존재원	2,000	5,000	20,000	20,000	20,000	67,000	
	소계(b)	215,000	855,000	1,755,000	1,755,000	1,755,000	6,335,000	

다. 부대의견: 2023년 시립도서관 개관 및 2024년 이후 시립도서관 운영 예산 반영

평 생 학 습 센 터 소 장 문 영 춘 (인)

사 천 시 공 보

제 779 호

사천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재원조달		215,000	855,000	1,755,000	1,755,000	1,755,000	6,335,000
의 존 재 원	소 계	2,000	5,000	20,000	20,000	20,000	67,000
	보조금 (국도비)	2,000	5,000	20,000	20,000	20,000	67,000
	지방교부세						
자 체 수 입	소 계	213,000	850,000	1,735,000	1,735,000	1,735,000	6,268,000
	지방세	213,000	850,000	1,735,000	1,735,000	1,735,000	6,268,000
	세외수입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2022년 당초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없음

평 생 학 습 센 터 소 장 문 영 춘 (인)

사 천 시 공 보

제779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문화의 진흥을 위해 독서 문화를 조성·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천시민의 지식 능력 향상과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 보장을 위한 시책 등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독서 문화 진흥 시행계획)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 문화 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사 천 시 공 보

제779호

4. 독서 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독서 문화 진흥 사업) 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고,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독서교육 및 독서동아리 활동
2.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3. 다독자 선발, 공모전, 도서·잡지 배부전 등 독서 관련 행사
4. 북스타트 등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5. 개관 기념 행사 및 도서관 홍보 행사
6. 독서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지역서점과의 협력 사업
7. 독서 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 문화 활동

8. 그 밖에 시장이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행사 참여자 등에게 기념품·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①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 시행계획이 원활하

사 천 시 공 보

제779호

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서관, 교육지원청 및 학교 등 문화 기관이나 교육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 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민·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규

□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독서 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독서 교육 기회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의 독서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독서의 달 행사 등) ① 국가는 국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독서의 달 설정, 독서 관련 행사, 포상·표창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행정상·재정상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79호

사천시 공고 제2022-731호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수강료 등의 면제 신청, 기증자료의 관리, 강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어린이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수강료 등의 면제 신청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7조)
- 나. 기증자료의 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6조)
- 다. 강사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7조)
-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사 천 시 공 보

제779호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평생학습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평생학습센터소장)

(우편번호: 52516, 주소: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무산로 21

전화번호: 055-831-2960, 팩스번호: 055-831-2969)

사 천 시 공 보

제 779 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어린이도서관 운영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사 천 시 공 보

제779호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2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2. 5. .

제 출 자: 평생학습센터소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수강료 등의 면제 신청, 기증자료의 관리, 강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어린이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수강료 등의 면제 신청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7조)

나. 기증자료의 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6조)

다. 강사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7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사 천 시 공 보

제779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도서관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5. . ~ 2022. 6.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779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27조”를 “제27조”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운영위원”을 “위원”으로, “양성평등법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를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6조의 제목 “(사용허가)”를 “(사용허가 및 취소)”로 한다.

제17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수강료 등을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사천시에”를 각각 “시에”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79호

제26조(기증자료의 관리) ①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소장 자료로 등록한 후 대출·열람하게 해야 한다.

② 기증받은 자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증도서대장에 등재한다.

③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기증을 거부하거나 해당 자료가 필요한 시설에 재기증 할 수 있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강사위촉 및 강사수당) 시장은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경력자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27조에 따라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보존·열람·대출하고 평생교육의 증진과 지역의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생략)</p> <p>② <u>운영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등 관련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u></p> <p>③ <u>위원장과 위원</u>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u>위원의 결원에 따라 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p>④ <u>운영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다만, 위탁 운영의 경우에는 관장이 임명할 수 있다.</u></p> <p>제16조(사용허가) ①·② (생략)</p>	<p>제1조(목적) ----- <u>제27조</u>----- ----- ----- ----- ----- -----.</p> <p>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위원</u>----- ----- ----- <u>특정 성(性)</u> <u>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u></p> <p>③ <u>위원장과 위원</u>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u>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p>④ <u>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u> -----.</p> <p>제16조(사용허가 및 취소) ①·②</p>

제17조(수강료 등) ① ~ ⑤ (생략)

<신 설>

⑥ (생략)

제19조(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천시에 주민등록이나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2. 사천시에 소재한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3. 사천시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4. (생략)

② (생략)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현행과 같음)

제17조(수강료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에 따라 수강료 등을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19조(회원가입) ① -----

1. 시에 -----

2. 시에 -----

3. 시에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6조(기증자료의 관리) ①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소장 자료로 등록한 후 대출·열람하게 해야 한다.

② 기증받은 자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증도서대장에 등재한

<신 설>

다.

③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기증을 거부하거나 해당 자료가 필요한 시설에 재기증 할 수 있다.

제27조(강사위촉 및 강사수당) 시장
은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경력자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관 련 법 규

□ 도서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게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7조(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79호

사천시 공고 제2022-745호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기준(상시근로자 수)을 없애고,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건전한 기업활동 지원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대상 정비(안 제9조)

-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을 삭제하여 지원 대상 확대

나. 중소기업 전시회 참가 지원 확대(안 제10조)

사 천 시 공 보

제 779 호

- 국내 전시회 → 국내·외 전시회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우주항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우주항공과장)

[(우)52539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청 우주항공과)

전화번호: 055)831-3479, 팩스번호: 055)831-6044]

사 천 시 공 보

제 779 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성명(단체명):

주 소: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사 천 시 공 보

제779호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2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2. 5. .

제 출 자: 우주항공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기준(상시근로자 수)을 없애고,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건전한 기업활동 지원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대상 정비(안 제9조)
 -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을 삭제하여 지원 대상 확대
- 나. 중소기업 전시회 참가 지원 확대(안 제10조)

사 천 시 공 보

제779호

- 국내 전시회 → 국내·외 전시회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5. . ~ 2022. 6. .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779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1. “기업”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지사·주사무소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6.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시장은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 제목 “(해외품질규격인정 지원)”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 천 시 공 보

제779호

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이 해외규격인증획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컨설팅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 제목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 을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관, 단체, 협회” 를 “기관·단체·협회” 로, “국내” 를 “국내·외” 로, “부스임차료” 를 “부스 임차료” 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지원금액과 지원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기업”이란 관내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p> <p>2.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건축법」 제2조제2항제17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p> <p>3. “근로자”란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p> <p>4. (생략)</p> <p>5. “기업유치”란 시 관외 기업의 본사나 공장을 관내로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p> <p>6.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p> <p>7. “항공우주산업”이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기업”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지사·주사무소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p> <p><삭 제></p> <p><삭 제></p> <p>4.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6.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p> <p><삭 제></p>

② (생략)

제10조(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이 다른 기관, 단체, 협회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전액 기업체 부담으로 국내 전시회(박람회를 포함한다)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부스임차료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소기업의 지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이고, 신청일 현재 관내에 소재하며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기업
2. 기업별 지원은 신청기업이 지원 예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지원 횟수가 적은 기업을 우선
3. 지원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다른 조례의 준용) 보조금의

신청 및 사업의 정산·검사 등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① -----기관·단체·협회 -----
----- 국내·외 -----
-----부스 임차료-----
-----.

② 지원금액과 지원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삭 제>

<삭 제>

사 천 시 공 보

제779호

사천시 공고 제2022-748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 나.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감염병 대응,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등) 추진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인건비 인력 증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증원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 가. 정원의 총수(안 제2조)
 - 1) 총수: 984명 → 997명(증 13명)

사 천 시 공 보

제779호

2) 집행기관의 정원: 963명 → 976명(증 13명)

3)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1명(변동없음)

나.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3)

1) 총계: 984명 → 997명(증 13명)

2) 일반직 계: 953명 → 966명(증 13명)

가) 3급: 1명(변동없음)

나) 4급: 7명(변동없음)

다) 5급: 51명(변동없음)

라) 6급 이하 소계: 893명 → 906명(증 13명)

마) 전문경력관 소계: 1명(변동없음)

②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가. 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 조정(안 제2조 별표)

2) 6급: 249명(증 1명)

가) 행정+시설: 27명 → 28명(증 1)

3) 7급: 275명(증 2명)

가) 시설: 20명 → 21명(증 1)

나) 행정+농업+녹지: 3명 → 4명(증 1)

4) 8급: 230명(증 4명)

가) 농업: 1명 → 2명(증 1)

나) 간호: 18명 → 20명(증 2)

다) 시설: 17명 → 18명(증 1)

5) 9급: 152명(증 6명)

가) 사회복지: 7명 → 12명(증 5)

나) 보건: 1명 → 2명(증 1)

다) 시설: 11명 → 12명(증 1)

라) 운전: 5명 → 4명(감 1)

사 천 시 공 보

제 779호

4.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570, FAX : 831-6021)

사 천 시 공 보

제 779 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규칙)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 779 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2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2. 5. .

제 출 자: 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감염병 대응,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등) 추진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인건비 인력 증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증원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안 제2조)

- 1) 총수: 984명 → 997명(증 13명)
- 2) 집행기관의 정원: 963명 → 976명(증 13명)
- 3)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1명(변동없음)

사 천 시 공 보

제779호

나.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3)

- 1) 총계: 984명 → 997명(증 13명)
- 2) 일반직 계: 953명 → 966명(증 13명)
 - 가) 3급: 1명(변동없음)
 - 나) 4급: 7명(변동없음)
 - 다) 5급: 51명(변동없음)
 - 라) 6급 이하 소계: 893명 → 906명(증 13명)
 - 마) 전문경력관 소계: 1명(변동없음)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반영 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2) 입법예고
 - 가) 기 간: 2022. 5. 19. ~ 5. 30.(10일 이상)
 - 나) 제출의견: 없음, 건
 -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4) 비용추계서: 붙임
-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 779 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 요약

가.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정원 증원: 13명(안 제2조)

나. 비용추계의 결과

1) 추계의 전제: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감염병 대응,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인력 증원 범위 내 정원 증가 인원을 조례에 반영함에 따른 예산이 추가로 필요함.

2) 추계결과 (단위: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 계
		세출	인건비	492,098	500,464	508,972	517,625	526,425
소계(a)	492,098		500,464	508,972	517,625	526,425	2,545,584	
세입	지방세	492,098	500,464	508,972	517,625	526,425	2,545,584	
	의존재원	-	-	-	-	-	-	
	소계(b)	492,098	500,464	508,972	517,625	526,425	2,545,584	

※ 호봉인상률 최근 3년간 평균 1.7% 적용

다. 부대의견: 2022년 예산범위에서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름

행 정 과 장 백 원 희 (인)

사 천 시 공 보

제 779 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 계
재원조달	492,098	500,464	508,972	517,625	526,425	2,545,584
의존 재원	소 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492,098	500,464	508,972	517,625	2,545,584
	지방세	492,098	500,464	508,972	517,625	2,545,584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기준인건비 승인 인력 13명: 자체수입(지방세)

3.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없음

행 정 과 장 백 원 희 (인)

사 천 시 공 보

제779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984명” 을 “997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963명” 을 “976명” 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종류별” 을 “지방공무원 종류별” 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사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984명</u>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u>963명</u></p> <p>2. (생략)</p>	<p>제2조(정원의 총수) ----- ----- <u>997명</u>----- -----.</p> <p>1. ----- <u>976명</u></p> <p>2. (현행과 같음)</p>
<p>제3조(정원채정기준) ① <u>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u></p> <p>② (생략)</p>	<p>제3조(정원채정기준) ① <u>지방공무원종류별 -----</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직급별 정원) <u>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u></p>	<p>제4조(직급별 정원) <u>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제5조(직렬별 정원) <u>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제5조(직렬별 정원) <u>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u></p>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
총 계	997							
정무직 계	1	1						
단체장(시장)	1	1						
일반직 계	966							
3급	1	1						
4급	7	4	1	2				
5급	51	26	2	6	3	1	7	6
6급 이하 소계	906							
전문경력관 소계	1							
별정직 계	-							
6급 상당	-							
연구직 계	1							
연구사	1							
지도직 계	29							
지도사	29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3. 12. 4., 2021. 12. 16.>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 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4. 10.>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

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채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채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3. 10.>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7. 3., 2013. 12. 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6.>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79호

사천시 공고 제2022-749호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재난대응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 변경(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 →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 나. 현장응급의료소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다.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 라.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요청대상 변경(안 제23조)
- 마. 통합지원본부 철수에 관한 사항 명확화(안 제25조)

사 천 시 공 보

제 779 호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재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재난안전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3310, FAX: 831-6036)

사 천 시 공 보

제 779 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 개정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779호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2. 5. .
제 출 자: 재난안전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재난대응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제명 변경(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 →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 나. 현장응급의료소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다.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 라.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요청 대상 변경(안 제23조)
- 마. 통합지원본부 철수에 관한 사항 명확화(안 제25조)

사 천 시 공 보

제779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5. 19. ~ 2022. 5. 30.(11일간)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779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를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2조제6호 중 “통합지원본부가 현장 출동 시간이 지연되는 오지 마을과 도서 낙도에”를 “통합지원본부장의 임명을 받아”로, “자를 통합지원본부의 장이 임명하고 현장대응팀장의 지휘를 받는 재난지역 소속 읍·면·동·출장소장을 말한다”를 “재난지역 관할 읍·면·동·출장소장을 말한다”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책본부장”을 “사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방조제등”을 “방조제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좌초등”을 “좌초 등”으로, “예상 되거나”를 “예상되거나”로 한다.

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등의 확산

제7조의 제목 “(통합지원본부 실무팀편성 및 임무)”를 “(통합지원본부

사 천 시 공 보

제779호

실무팀 편성 및 임무)”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합지원본부의 장” 을 “통합지원본부장” 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연락관 파견)” 을 “(업무연락관 파견)”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락관” 을 “업무연락관” 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사고수습 총괄부서의 현장대응팀장과 현장책임관 지정)” 을 “(사고수습 총괄부서의 현장대응팀장과 현장책임관 임명)” 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재난이 현장대응팀장의 신속한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발생한 경우에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지역 관할 읍·면·동·출장소장을 재난현장의 초기대응 현장책임관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현장책임관은 현장대응팀장의 지휘에 협력해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통신망 연락관” 을 “통신망, 업무연락관” 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긴급구조대응 활동의 의료 지원)” 을 “(현장응급의료소 지원)” 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현장응급의료소” 를 “의료소”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현장응급의료소장” 을 “의료소의 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 을 “제4항” 으로, “응급의료기관” 을 “응급의료기관의 장” 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79호

① 대책본부장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현장응급의료소(이하 “의료소”라 한다) 설치를 위하여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소의 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부상자 응급처치 및 지정병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9조제2항 중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자원봉사센터에서 부족한 자원 지원요청이 있을시”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부터 자원봉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요청받은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재난관리책임기관에”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으로 한다.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동원된 인력 및 자원에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자원봉사 단체 및 인력에 대하여 안전교육 실시

사 천 시 공 보

제779호

2. 사고현장 작업방법 교육과 자원·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3. 작업복 및 작업도구 지원 등 그 밖에 재난현장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의 제목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을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난관리책임기관” 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법 제37조제1항6호” 를 “법 제37조” 로, “긴급구조통제단장” 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으로, “등을” 을 “등의” 로, “요청하여야” 를 “요청해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요청받은 긴급구조통제단장” 을 “조치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으로, “하여야” 를 “해야” 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통합지원본부의 장” 을 “통합지원본부장” 으로 한다.

제25조 중 “경우,” 를 “경우 제9조에 따른 현장책임관에게 통합지원 본부의 권한을 위임하고” 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조례에 따른 대책본부장” 을 “대책본부장” 으로,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위임한다” 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 로 한다.

별표 2와 별표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u> <u>설치·운영조례</u></p>	<p><u>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u> <u>설치 및 운영조례</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5. (생략)</p> <p>6. “현장책임관”이란 <u>통합지원본부가 현장 출동 시간이 지연되는 오지 마을과 도서 낙도에 재난현장의 원활한 통합대응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의 현장대응팀이 가동되기 전까지 현장대응팀장의 임무를 대행하는 자를 통합지원본부의 장이 임명하고 현장대응팀장의 지휘를 받는 재난지역 소속 읍·면·동·출장소장을 말한다.</u></p> <p>7. (생략)</p> <p>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u>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수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u></p>	<p>제2조(정의)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 <u>통합지원본부장의 임명을 받아</u> ----- ----- ----- ----- ----- <u>재난지역 관할 읍·면·동·출장소장을</u> <u>말한다.</u></p> <p>7. (현행과 같음)</p> <p>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u>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u>----- -----</p>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 5. (생략)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①·② (생략)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 6. (생략)

7. 신종 전염병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발생

8. 저수지, 댐, 방조제 등 제방 붕괴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

9. 해양 선박사고 또는 유선·도선의 충돌, 좌초 등 대규모 피해가 예상 되거나 발생한 경우

10.·11. (생략)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팀편성 및 임무) ① (생략)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부서장이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 ⑥ (생략)

제8조(연락관 파견) ①·② (생략)

-----.

1. ~ 5. (현행과 같음)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6. (현행과 같음)

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등의 확산

8. ----- 방조제 등 -----

9. -----
----- 좌초 등 -----
예상되거나 -----

10.·11. (현행과 같음)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팀 편성 및 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통합지원본부장-----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업무연락관 파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지원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9조(사고수습 총괄부서의 현장 대응팀장과 현장책임관 지정)

- ① (생략)
- ② 제1항에 따라 현장대응팀장과 현장책임관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 1. 3. (생략)
- 4. 재난이 오지마을 또는 도선 낙도의 읍·면·동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장은 읍·면·동·출장소장으로 하여금 재난현장의 초기대응 현장책임관으로 임명한다. 현장책임관은 통합지원본부의 현장대응팀장의 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연락관 등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

③ -----

----- 업무연락관-----.

제9조(사고수습 총괄부서의 현장 대응팀장과 현장책임관 임명)

- ① (현행과 같음)
- ② -----

-----.

- 1. 3. (현행과 같음)
- 4. 재난이 현장대응팀장의 신속한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발생한 경우에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지역 관할 읍·면·동·출장소장을 재난현장의 초기대응 현장책임관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현장책임관은 현장대응팀장의 지휘에 협력해야 한다.

제10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
----- 통신망.
업무연락관 -----

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6조(긴급구조대응 활동의 의료 지원) 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응급의료소의 소장(보건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지정병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과 재난현장에 동원된 자원봉사 단체의 인력에 대한 상황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에 현장응급의료소가 정상가동 될 때까지 통합지원본부 현장대응팀에 소속한 의료인력과 자원을 긴급구조 대응 활동에 우선 지원한다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

-----.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현장응급의료소 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현장응급의료소(이하 “의료소”라 한다) 설치를 위하여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소의 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부상자 응급처치 및 지정병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 의료소

④ ----- 의료소의 장-

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재난현장 통제)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의 자원지원팀에 소속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 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동원된 인력 및 자원에 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자원봉사 단체 및 인력에 대하여 안전교육 실시
2. 사고현장 작업방법 교육 및 작업현장 분산배치
3. 작업복 및 작업도구 지원 등.

<신 설>

--.

⑤ 제4항-----
응급의료기관의 장-----
-----.

제19조(재난현장 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

제20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동원된 인력 및 자원에 게 각 호의 사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자원봉사 센터에서 부족한 자원 지원요청이 있을시 법 제39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2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① (생략)

② 제1항의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해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법 제37

항을 지원한다.

1. 자원봉사 단체 및 인력에 대하여 안전교육 실시

2. 사고현장 작업방법 교육과 자원·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3. 작업복 및 작업도구 지원 등 그 밖에 재난현장에 필요한 사항

③ -----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으로부터 자원봉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요청받은 경우 -----
-----.

④ 제3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
-----.

제22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

제23조(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①

----- 법 제37조-----

조제1항6호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통신 긴급 복구 등을 필요한 조치를 요청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긴급 구조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수습·복구체계의로의 전환)

① (생략)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수습·복구체계의로의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5조(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어 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 3. (생략)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 등의 -----
- 요청해야 -----.

② ----- 조치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 해야 -----.

제24조(수습·복구체계의로의 전환)

① (현행과 같음)

② 통합지원본부장-----

-----.

제25조(통합지원본부 철수) -----

----- 경우 제9조에 따른 현장책임관에게 통합지원본부의 권한을 위임하고 ---.

제26조(권한의 위임) 대책본부장-----

-----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 3. (현행과 같음)

[별표 2]

통합지원본부 편제 주요임무(제7조 관련)

구 분	주 요 임 무
통합지원본부장 (부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지원본부장으로 현장대응·수습 총괄 •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물자·인력 등을 지원 • 구조활동 완료후 사고현장의 수습·복구 활동 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등
공보관 (공보감사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미디어 홍보 • 공공정보 모니터링 • 대응단체 정보공유 등
연락관 (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 등
상황총괄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지원본부 운영 • 현장 상황정보 수집·분석·예측 • 현장 상황정보 보고·공유·기록 •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 •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보고 등
현장대응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응급복구 • 에너지 복구 • 의료·방역(현장 응급의료소 운영) • 환경정비 •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구조 지원 등
자원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통신 지원 • 현장대응 자원 지원 • 교통대책 • 자원봉사관리(자원봉사지원단 운영) 등
대민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 생활안정지원 • 임시주거시설 지원 • 이재민 구호, 심리 지원 • 장례지원 등

[별표 3]

재난유형 및 사고수습 주관부서 (제7조 및 제9조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교육부	1.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평생학습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우주전파 재난 2. 정보통신 사고 3.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4.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 재난안전과
외교부	1.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재난안전과
국방부	1.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행정과
행정안전부	1. 공공청사 2. 공동구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3.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4.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지진·화산·낙뢰·가뭄·한파·폭염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회계과 도로과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
문화체육관광부	1.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문화체육과
농림축산식품부	1. 가축 질병 2. 저수지 사고	농축산과 건설과
산업통상자원부	1.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2. 원유수급 사고 3.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으로 한정한다) 4. 전력 사고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보건복지부	1. 보건의료 사고	치매관리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1. 감염병 재난	보건위생과
환경부	1.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2. 식용수 사고 3.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환경보호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보호과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4.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5. 황사 6. 미세먼지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고용노동부	1.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재난안전과
국토교통부	1. 도로터널 사고 2. 육상화물운송 사고 3. 항공기 사고 4.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5.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 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도로과 민원교통과 민원교통과 민원교통과 건축과
해양수산부	1.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2. 조수(潮水) 3.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4. 해양 선박 사고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금융위원회	1.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지역경제과
원자력안전위원회	1. 인접지역 방사능 누출 사고	환경보호과
소방청	1. 화재·위험물 사고 2.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재난안전과 시설관련부서
문화재청	1.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체육과
산림청	1. 산불 2. 산사태	녹지공원과 녹지공원과
해양경찰청	1.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해양수산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관 련 법 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 ②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